

2021년
세무조사관련
국정감사 입수 자료

SAMPLE



CONTENTS

I. 세무조사관련 국정감사자료	11
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목별 유형별(법인, 개인) 세무조사	
2. 최근 5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정기, 비정기포함)	
3.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유형별 정기세무조사 및 비정기세무조사 건수	
4. 세목별 세무조사 총건수	
5. 최근 5년간 유형별 탈세제보 접수 건수 및 내역(법인, 개인 구분)	
6. 재산추적 조사 인력 및 건수, 실적	
7. 법인·개인사업자 간편조사, 비간편조사 건수	
8.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지방청별)	
9.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500억초과, 정기, 비정기)	
10.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11. 최근 5년간 업종별 자료상 조사 실적	
1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양도,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구분)	
1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4.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실적	
15. 최근 5년간 밀알정보 수집 통계	
16.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이해관계신고 건수	
17. 금융재산 일괄조회 건수	
18. 지난 3년간 영장없이 추진된 계좌추적 현황	
19. 최근 3년간 FIU정보 활용 실적	
20.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현황	
21. 최근 3년간 주요 탈세적발 11가지 사례 SAMPLE	
22.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설치운영현황	
23. 역외탈세 세무조사현황	
24.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25. 대부업자 탈세신고, 처리 현황	

CONTENTS

- 26. 주류 유통과정추적 세무조사 현황
- 27.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법인, 개인)
- 28. 가상자산, 다크웹, 역외탈세등 조세회피행위 방지방안

Ⅱ. 불복 및 소송 관련 국정감사자료 49

- 1. 고충민원 대표적인 유형 5가지 **SAMPLE**
- 2.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 청구 및 인용 건수
- 3.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규모별 이의신청, 심사, 심판, 소송, 감사원심사 건수, 처리, 패소(소송) 등 현황
- 4.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불복 인용사건 중 직원 귀책 현황
- 5. 5년간 국세청 소송패소사건 원인별 현황
- 6. 지방청별, 부서별 과세자료 처리현황
- 7. 최근 5년간 소송현황(행정 및 민사소송)
- 8. 최근3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 9. 세목별 이의신청 인용율
- 10. 세목별 심사청구 인용율
- 11. 세목별 심판청구 인용율
- 12. 지방청별,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Ⅲ.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69

■ 징세·납세자보호 분야 / 69

- 1.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누락 **SAMPLE**
- 2. 매매예약 가등기권자의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압류 검토소홀
- 3. 환급기산일 적용 잘못으로 국세환급기산금 과다지급
-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미지정
- 5. 체납액 있음에도 압류해제 잘못
- 6. 등기명의인 등재 오류 재산 미압류

CONTENTS

7. 과세자료 지연처리에 의한 조세채권 부족징수
8. 반송된 납세고지서 관리소홀로 조세채권 부족징수
9.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부적정
10. 압류해제 지연 처리
11.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한 세금포인트 전산처리 부적정
12. 제2차 납세의무 종결 미처리 및 관련 압류물건 미해제

■ 부가가치세 분야 / 76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2.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3. 재고자산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등 부족징수
4. 과세사업 미사용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5. 수출업자 등의 외화수입금액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6. 사업용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7. 아파트 등 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자 검토 소홀
9.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10. 면세 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수출업자 매입세액 부당 환급
11. 사업자등록 명의위장혐의자에 대한 현장확인 잘못
12. 공급시기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검토소홀
13. 일반환급 신고 사업자에 대한 환급결정 지연처리
1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자료의 소득자료 통보 누락
15.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원천징수 누락
16. 공통매입세액 적용 오류로 부가가치세 부족 징수
17.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검토 소홀
18. 개별소비세 무신고자 과세누락

CONTENTS

■ 소득세 분야 / 88

1.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2. 토지 등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누락
3.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잘못으로 조세채권 부족징수
4. 과세자료 통보 잘못으로 조세채권 일실 위험 초래
5. 건물신축 판매 시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 소득세 부족징수
6. 인적용역사업자 수입금액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7.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액 과소 신고로 종합소득세 부족 징수
8.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잘못
9.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
10. 경비율 적용 잘못으로 종합소득세 과소납부
11. 간편장부 신고자의 필요경비 과대계상
12. 소득구분 잘못으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1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필요경비 추인분 검토소홀

■ 재산세 분야 / 96

1. 과세·비과세 양도가액 안분계산 누락으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3. 부동산 과다법인의 비상장주식 과소평가로 증여세 부족징수
4. 명의신탁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5. 양도가액 임의배분 신고자에 대한 양도세 부족징수
6. 가업승계주식 등 과세특례신고자에 대한 증여세 부족징수
7. 사전증여 받은 금양임야를 비과세하여 상속세 부족징수
8. 보유기간 요건 미충족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 부적정
9.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10.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으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자 검토 소홀

CONTENTS

12. 유상증자(저가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누락
13. 비사업용 토지 여부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14. 취득가액이 확인 가능함에도 환산가액 신고내용 그대로 시인
15.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고가주택) 검토 소홀
16.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함에도 1세대1주택 결정 잘못

■ 법인세 분야 / 106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 소홀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임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 과소신고
3. 배당기준일전3개월내취득주식에대한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적용잘못
4. 상속인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 없는 고액채권 대손금 부인
5. 외국납부세액 검토소홀로 법인세 부족징수
6. 중소기업 관련 부당 공제감면 (독립성요건 미충족)
7. 고정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미적용으로 법인세 과다환급
8.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9. 기존 사업체의 사업확장으로 요건 불비한 창업감면 부인
10.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잘못
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부족징수
12. 투자세액공제 후 2년 내 처분자산에 대한 법인세 부족징수
13.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등
14. 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잘못
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부적정
16.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오류로 인한 법인세 부족징수
1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누락
18.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 산출세액 환산누락

CONTENTS

■ 조사 분야 / 118

1. 용역의 저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누락 **SAMPLE**
2. 자산원가 손금산입 세무조정 누락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족징수
4. 법인세 경정 시 신고·경정 되지 않은 결손금을 잘못 공제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잘못으로 법인세 부족징수
6. 기업인수 관련 자문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누락
7. 벌금 과소부과 및 양벌규정 적용 누락
8.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의 누락
9. 조사종결 후 자료통보 누락
10. 미회수 대여금 상여처분 시 자산의 감액조정 누락
11.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공급한 용역에 대한 과세누락
12. 매출누락 대응원가의 근거자료 수집 및 검토 소홀
13. 과소신고 가산세 잘못 적용으로 제세 부족징수

IV.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127

1.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SAMPLE**
2. 탈세 방지 및 적발을 위한 노력 **SAMPLE**
3.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SAMPLE**
4. 세무조사 관련 절차적 법령의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5.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필요
6.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 등 검토
7. 부동산 관련 탈세 등 대응 강화
8. 온라인 기반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9.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10. 상속·증여세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CONTENTS

11. 과세전적부심사의 실효성 제고
12. 조세불복수단의 처리기간 단축 및 일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13. 과오납환급 및 조세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14.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검토 필요
15. 국세통계의 적시성 있는 공개 등
16.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17. 현금영수증 및 기부금영수증 제도 개선
18. 주류 관련 제도개선
19.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
20.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22. 국세청 정원 확대 및 조정, 파견의 적정성 검토 필요
23. 국세청 청렴도 개선
24. 연계정보(CI) 활용방안 마련
25. 과세전적부심사 및 과세사실판단지문위원회 운영 개선(서울지방국세청)
26. 자료상에 대한 대응 강화(중부지방국세청)
27. 경력직원 비율 상향 필요(인천지방국세청)
28. 중장기 인력 증원 계획 마련(대전지방국세청)
29.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광주지방국세청)
30. 결손처분과 국세환급 축소 방안 마련(대구지방국세청)
31. 과세품질 제고 방안 마련(부산지방국세청)

V. 2021년 국세행정운영방안 156

1. 지난해 주요 성과
2. 2021년 세정 여건 및 시사점
3.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CONTENTS

4.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1)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 (2)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 (4)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5.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Ⅵ. 기타 171

1.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회신한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에 대해 해석 등 오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건수
2. 최근 5년간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거래건수
3. 2억원 이상 장기 체납자 현황 및 구치소 감치 현황
4. 최근 2년간 연도별 발행 간행물 및 정기간행물 목록
5.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접수 건수
6. 국세청 부서별 주요 현안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진행현황

21 최근 3년간 주요 탈세적발 11가지 사례

1.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사주 처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자금을 빼낸 후, 전업 주부인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 급여 지급 및 사주 자녀 부동산·주식 취득에 사용

□ 주요 적출내용



- 사주 000은 생필품으로 유명한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 계열사 B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매입해 오던 중 사주 배우자 명의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한 다음, C회사를 원재료 매입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A회사 이익을 빼돌림
- 빼돌린 이익 중 00억 원 상당액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거짓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주택 최고급 인테리어·고가 슈퍼카 취득 등에 사용하고
 - 00억 원 상당액을 거짓 원가 명목으로 유출하여 자녀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사용
-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사주 자녀회사에 지급수수료 부당지급, 해외현지법인을 도관 삼아 자녀 유학비 대납 등 다수 혐의 적출

□ 조치사항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증여세, 소득 귀속자인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0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000과 A, B, C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2. 사주는 아파트 개발사업 직전 시행사 주식을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한 후, 지배회사의 적극 지원을 통해 시행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사주 손자는 정당한 노력없이 부를 축적

Ⅱ. 불복 및 소송 관련 국정감사자료.

1 고충민원 대표적인 유형 5가지

□ 2020년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충민원 처리현황〉

(건)

구분	처리대상 건수			처리 건수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인용	인용불가	취하등	
2020년	2,365	60	2,305	2,236	773	539	924	129

□ 고충민원의 대표적인 주요 내용은 ① 압류해제 등의 체납처분 관련 사항, ② 명의 도용 또는 대여로 과세된 처분의 취소 요청, ③ 제2차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 해제 요청, ④ 제세 결정·경정분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 인정 요구, ⑤ 세법 규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감면 요청 등입니다.

2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 청구 및 인용 건수

□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 청구 및 인용 건수 및 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Ⅲ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징세·납세자보호 분야

1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누락

◆ 압류부동산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추가압류해야 함에도 업무 미숙으로 채권압류 누락하여 압류 조치

□ 법령 및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제1항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납세자의 부동산은 압류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었으면, 당초 압류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어 보상채권에 대해 별도로 압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2 매매예약 가등기권자의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압류 검토소홀

$$\text{산출세액} = \left(\begin{array}{l} \text{법 제13조의 규정을} \\ \text{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end{array} \times \frac{12}{\text{사업연도의 월수}}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frac{\text{사업연도의 월수}}{12}$$

지적 내용

- 사업연도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경우 산출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 후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 부족징수

조사 분야

1 용역의 저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누락

◆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됨에도 경정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대표이사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누락

IV.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1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 시정·처리요구사항

체납액이 증가한 반면 체납정리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므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범위 확대, 체납담당 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성과금 지급, 체납 재산조회 대상 확대 등 특단의 대응 방안을 검토·마련할 것

1. 시정·처리상황

- 체납징수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설치('20.1월)하고,
 - 실적우수자 포상 강화*, 체납추적전문요원 자격 신설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체납·추적분야 표창 확대(37명 → 49명), 체납징세과 포상금 증액(71백만원 → 82백만원)
- '17년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2억원(종전 3억원)으로 하향하고,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대상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여권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체납인프라를 강화하였음

2. 향후 추진계획

-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수색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 '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음

2 탈세 방지 및 적발을 위한 노력

◆ 시정·처리요구사항

탈세 방지 및 적발을 위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포상금 확대, 공공기관 탈세 감독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고소득 사업자·민생침해사범의 탈세 및 편법 증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

1. 시정·처리상황

-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탈세, 전문직·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음
 - *'20년의 경우 320개 공공기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소송비용 손금처리 등 신고 시 유의사항 2,863건 안내
 - 고질적 탈루분야인 전문직·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행위 적발을 위하여 탈세제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용한 탈세제보 제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포상금 한도액 인상 : '13년 10억원 → '14년 20억원 → '15년 30억원 → '18년 40억원
 - 지급률 상향 : '13년 5~15% → '18년 5~20%
 - 또한, 일감 몰아주기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출처 검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검증·과세하고 있음
 -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내부교육(6개), 위탁교육(17개), 전문직위 지정, 국제거래·금융 등 특정 분야 전담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조사전문교육 이수 인력을 조사분야에 우선 배치,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전문성을 축적·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 중임

2.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검찰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를 강화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탈세차단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3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시정·처리요구사항

역외탈세 증가에 대응하여 납세자 입증책임으로의 전환, 유관기관 TFT 구성, 국세청 전문인력 양성 및 지방청의 역외탈세 정보수집인력 증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상향, '역외탈세 등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검토할 것

1. 시정·처리상황

□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입증책임 전환) '19년 세법개정시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으로의 전환이 상당부분 반영* 되었음

- * ① 국제적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부담 감소 시 납세자가 조세회피의도 없음을 입증(국조법 §2의2④⑤)
- ②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경정청구시 근거서류 제출의무 부여(법법 §98의4~6외)
- ③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동종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추정(국조법 §11⑦)

○ (유관기관 공조) 역외탈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음

* '18.6.22.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출범 후, 전문인력 파견 등 긴밀한 공조 실시

○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거래 전문보직자 132명 신규선발 및 지방청·세무서 전문보직 161석을 확충하였고 지속·체계적인 교육과 보직관리 실시 중임

○ (정보수집인력) 「지방청·세무서 역외탈세 정보수집전담인력 증원 추진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의결과 불채택되었으나 필요성 등 논리를 보완하여 '21년 재추진 예정임

○ (해외금융계좌) '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인하(10억원 → 5억원)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제출('20.3월)하고, 기재부와 협의 중임

* 과태료 하한율 10% 적용범위를 5~10억원으로 조정하고, 10억 이상 구간의 과태료 부과율을 최대 17%로 인상

○ (강제적 보고제도) 제도 도입을 위해 외국사례와 OECD 등 국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기재부와 협의 중임

2.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유관기관 공조,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증원을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음